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문번역본

국제앰네스티는 7 백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 2019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내 허가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이외의 저작권자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2016 년 초판 발행
국제앰네스티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K

문서번호: ASA 24/9712/2019

2019 년 1 월

원문 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도입	4
전차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4
국가인권체계	5
현장인권상황	5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5
정치범 수용소 및 자의적 구금	6
이동의 자유	6
노동 인권	7
아동 권리 및 교육에 대한 권리	7
사형제도	8
심의대상 국가에 대한 권고	8
붙임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국제앰네스티

도입

본 의견서는 2019년 5월 개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국가별정례인권검토(이하 'UPR')에 맞춰 작성됐다. 본 문서는 DPRK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기타 국제인권 관련 기구 참여 및 협력 등 DPRK의 과거 UPR 권고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평가를 담고 있다.

본 문서는 인권침해 진정 처리 및 DPRK가 당사국인 인권조약 이행과 관련 DPRK의 국가인권체계에 대한 평가도 담겨있다.

DPRK의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전차 심의에 대한 후속조치

2014년 제2기 UPR에서 유엔 회원국이 DPRK에 권고한 268개 항목에 대해 DPRK는 113개 항목을 수용했으며,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5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note), 93개 항목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¹

국제앰네스티는 DPRK 정부가 국제 인권메커니즘 참여를 확대하려 노력했다고 인정한다. 또한 DPRK가 UPR 권고²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추진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DPRK는 또 각각 9년, 14년 만의 공백을 깨고 아동권리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정례 보고서 제출을 재개했으며 이는 아동 및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다.³

국제앰네스티는 UPR 권고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권 관련 단체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에 DPRK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4년간 인권 전문 단체 중 어느 곳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⁴ 특히 현재까지 DPRK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DPRK 정부가 공정 재판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⁵ 이를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정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구금되거나 수감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모든 수감자와 기타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것과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⁶

¹ UPR 실무그룹 보고서 부록, A/HRC/27/11/Add.1, 2014년 9월 12일.

² UPR 실무그룹 보고서,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7(튀니지), 124.15(프랑스), 124.16(가나), 124.17(에스토니아).

³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30(이란), 124.34(쿠바), 124.37(태국), 124.64(노르웨이), 124.69(앙골라).

⁴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56(베트남).

⁵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114(이스라엘).

⁶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77-124.90(나미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마케도니아, 이탈리아, 시에라리온, 터키, 에콰도르, 벨기에,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프랑스, 헝가리, 몬테네그로), 124.92(독일), 124.95(스페인), 124.101(뉴질랜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국가인권체계

DPRK의 국가인권체계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유엔 DPRK 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2월 17일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후 조선인권연구협회란 이름의 국립 기관이 같은 해 9월 13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1992년 8월 27일 “비정부적인 인권단체”로 DPRK 정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협회의 사명에는 “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부기관들에 인권보장대책에 관하여 건의하며, 국제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2014년 보고서 발표 이후로 이 협회의 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관찰된다.

DPRK는 지난 UPR에서 자국민의 인권침해 진정을 검토할 국가 차원의 매커니즘을 설립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⁷ 그 같은 진정 매커니즘의 존재는 후에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DPRK 대표단이 언급한 바 있으며, 또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정보제공자들도 이를 언급한 바 있지만, 그 같은 매커니즘의 독립성, 불편부당성, 임무 범위, 절차, 효과성에 대해서는 가용할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DPRK 정부는 2015년 4월, DPRK가 당사국인 인권조약의 이행을 관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던 민족조정위원회들을 통합해 국제인권협약 민족위원회를 설립했다. 2017년 9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DPRK 관계자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족위원회는 “관련 협약과 국가의 법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권고 및 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동 심의 과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국가기관이 총괄적인 조정이 거의 없이 각기 다른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고 평했다.

현장인권상황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DPRK는 자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DPRK 내외부로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⁸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신문이나 기타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 지배층의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⁹

중국 접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시, 체포, 구금될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필수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해외에 사는 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DPRK 당국은 접경지대에 새로운 탐지 장치를 설치해 중국 이동통신망을 통한 이동전화 사용을 추적하고 신호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통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는 대개 불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⁷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124(러시아)

⁸ UPR 실무그룹 보고서,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130(인도네시아), 124.137(미얀마).

⁹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 심의”, 2017년 9월 20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120&Lang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DPRK의 국경선으로 갈라진 가족들이 연락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¹⁰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인터뷰한 이들은 최근 한국과 DPRK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히려 2018년에는 중국 이동통신망을 통한 통신은 더욱 어렵고 위험한 일이 되었다.

정치범 수용소 및 자의적 구금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12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범 수용소 네 곳에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 수용자 대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이 아닌, 국가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이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 또는 이른바 “연좌제”로 인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이다.

강제 송환된 이들을 포함하여 DPRK 사람들, 외국 국적자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체포되고, 장기간 구금됐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 중 불충분한 식량, 의료 조치를 경험했던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으며, 이들의 경험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구금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혹한 환경하에 수감됐거나 공정 재판 없이 수감됐던 외국인 중에는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2016년 수감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후 6일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한 미국 국적자 오토 워비어 *Otto Warmbier*도 있었다. DPRK 당국은 아직까지도 오토 워비어의 열악한 건강 상태의 원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2년 이상 수감됐던 캐나다 국적자인 임현수 목사의 경우는 수감 중 충분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¹¹

이동의 자유

DPRK 정부는 2014년 UPR 당시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더 용이하게 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사전 허가 없는 이들의 해외여행은 제한되고 있다.¹²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을 포함해 일부 여성의 경우는 인신매매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DPRK를 떠났지만, 중국 쪽 국경에 들어서고 나서는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거나 착취적 노동환경에 처해졌다.

DPRK를 떠나 한국에 재정착한 사람의 수는 2013년 1,514명에서 2017년 1,12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2001년 이래로 제일 낮은 수치다.¹³ 이 같은 추세는 DPRK를 떠나려는 이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은 중국-DPRK 접경지대의 경비가 강화된 것을 또 다른 유력한 이유로 꼽았다. 2017년 언론에서도 DPRK 정부가 사전 허가 없이 DPRK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당국에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⁴

2017년 11월에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DPRK를 떠난 사람들 10명이 중국 선양에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DPRK의 중국 접경 도시인 신의주에 구금되었다가 각각 조사를 위해 기존 거주지로 이송됐다. 이들 중 구정화라는 여성의 경우 3개월 이상 회령에 구금된 채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위험에

¹⁰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문서번호: ASA 24/3373/2016).

¹¹ 국제앰네스티, 북한: 수감된 캐나다 국적자 임현수 목사 건강 우려돼. (문서번호: ASA 24/6481/2017).

¹² UPR 실무그룹 보고서, A/HRC/27/10, 2014년 7월 2일, 권고 124.125(인도).

¹³ 2018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1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8년 10월 본 자료의 유엔 제출 당시에는 공개 전이었으나 본 자료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에 게재되기 직전 공개됐다.

¹⁴ 데일리 NK, “국가안전보위성, 중국에 탈북자 복송 요청”, 2017년 8월 28일,

www.dailynk.com/english/mss-asks-china-to-repatriate-defe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처해있다가 2018년 3월 1일 석방됐다. 구정화 아들의 경우 회령에 구금된 지 20일 만에 석방됐다. 그렇지만 함께 DPRK로 송환됐던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¹⁵

노동 인권

회색시장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DPRK의 민간 부문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공식적인 고용은 국가기관이나 국영기관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현재 공공 배급 체계의 붕괴로 대부분의 식량과 일상용품은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제엠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국영기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시장에서 쌀 1kg을 겨우 살 수 있을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단체협상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그 같은 행위가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돼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DPRK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타국 파견 노동자로 지원하기도 했다. 2017년, 일부 국가들이 DPRK의 대외 경제활동에 대한 유엔의 새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DPRK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동 비자 발급 및 갱신을 중단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DPRK 정부로부터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된다.

중국, 카타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DPRK 당국이 파견 노동자의 통신 및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일례로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 12명이 지배인을 따라 한국으로 간 사건이 있었다. 이 중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사전에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다고 후에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동안 여행증명서류를 직접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비자발적 여행의 위험에 놓여있었다.

해외 노동자들은 대개 과도한 노동시간 및 직업보건안전상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해당 국가에서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2017년에 러시아에서 일하다 사망한 DPRK 사람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당시 러시아는 DPRK로부터 약 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받았던 상황이었다. 2017년 5월, 모스크바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2명이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급성신부전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¹⁶

아동 권리 및 교육에 대한 권리

DPRK는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엠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은 아동이 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경제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취학연령 아동 다수는 열악한 건강 및 영양 상태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 3년 정도 입학할 미룰 수밖에 없다. 교육은 명목상으로는 “무상”이지만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토끼 가죽, 헌 신발, 고철 등을 내도록 요구한다. 그 같은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DPRK의 아동은 정보접근 제한으로 인해 다른 민족, 국적, 종교를 가진 집단에 대한 이해, 평화, 관용, 우정을 키우는 것과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 등 인권 가치에 대한 진정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이 같은 내용을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¹⁷

¹⁵ 국제엠네스티, 북한: 추가 정보: 강제송환된 여성, 반역 혐의를 받다. (문서번호: ASA 24/7963/2018).

¹⁶ 뉴스위크, “러시아, 모스크바 호텔에서 북한 노동자 2명의 의문사 사건 조사하다”, 2017년 5월 31일,

www.newsweek.com/two-north-koreans-found-dead-moscow-hotel-after-suspected-heart-attack-618019

¹⁷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 교육의 목적(제29조 제1항), UN Doc. CRC/GC/2001/1, 2001년 4월 17일, paras 4,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출 국제엠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아동들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매년 다른 분량의 농사일에 동원된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이들에 따르면 이 같은 노동은 연간 40 일에 달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나이가 든 아동의 경우 돌을 나르는 등 신체적 해를 입을 수 있는 고된 노동을 하기도 한다.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DPRK 대표단은 실제 요구되는 노동의 분량과 형태는 개별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DPRK의 현행 아동권리보장법이 16, 17세를 아동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¹⁸

사형제도

DPRK에서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는 한 사형제도 운용 현황에 관해 어떠한 공식 통계도 발표하지 않으며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며 이는 불공정 재판에서 항소 가능성 없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사형제도와 관련한 투명성 결여로 사형집행의 빈도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DPRK에서 온 개인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음란물 시청 등 국내법상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를 대상으로 한 처형 등 공개처형 사례가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정보제공자의 경우 국제앰네스티에 최근 공개처형이 중단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심의대상 국가에 대한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가인권체계

- 유엔인권조약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DPRK가 당사국인 조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정을 강화할 것.
- DPRK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 DPRK 방문을 요청하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
-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고려할 것.

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DPRK 내 모든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가족 등 가족 구성원 및 그 외의 사람들과 간섭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부모 자식 간의 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 등 불필요하고,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통신 감시를 중단할 것.
- 독립적인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외 매체에 대한 모든 검열을 중단할 것.
- 학교, 도서관, 기타 공공시설에서 인터넷(월드와이드웹) 접속이 가능하게 할 것.

¹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고서 심의", 2017년 9월 20일,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120&Lang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정치범 수용소 및 자의적 구금

- 국제기준에 맞는 공정 재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외국 국적자 등 모든 수감자를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구금 시설 내 수감자에 대한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동의 자유 제한

- DPRK 가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해 해외 여행에 대한 허가 요건을 삭제할 것.
- 허가 없이 DPRK 를 떠났다가 귀환한 사람이 구금이나 기소,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강제노동, 강제실종, 사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

노동 인권

- DPRK 의 국내외 국영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신과 가족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공정한 임금에 대한 권리 등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고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DPRK 의 국내외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과 합리적 노동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관행으로 보장할 것.
- 고용주의 노동자 처우를 규제 및 감독하고, 노동자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제기한 고충이 보복의 위험 없이 검토되고 구제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

아동 권리 및 교육에 대한 권리

- 아동권리보장법을 개정해 18 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할 것.
- 교육 접근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정기적인 학교 출석을 장려할 것.
- 아동권리보장법 제 22 조에 명시된 것 같이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
- 학교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분량이나 형태의 육체 노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등, 아동이 모든 형태의 착취 및 강제 또는 위험 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 법과 정책으로 교육이 아동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아동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생활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삶의 여러 선택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사형제도

- 모든 사형선고, 사형집행, 사형수 규모, 사형 관련 연간 통계, 법률이나 관행상 공개처형이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사형제도 운용 현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
-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첫 단계로 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국제앰네스티

붙임

국제앰네스티 발간 추가 참고자료¹⁹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폰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 2016년 3월. (문서번호: ASA 24/3373/2016).

북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7년 8월. (문서번호: ASA 24/6500/2017).

북한: 수용소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모자. 2017년 12월. (문서번호: ASA 24/7534/2017).

북한: 수감된 캐나다 국적자 임현수 목사 건강 우려대. 2017년 6월. (문서번호: ASA 24/6481/2017).

북한에서 학생이 체포되다. 2015년 7월. (문서번호: ASA 24/2075/2015).

¹⁹ 위 자료는 모두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https://www.amnesty.org/en/countries/asia-and-the-pacific/north-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제 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년 1월 발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겪는 불의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락처



info@amnesty.org



+44 (0)20 7413 5500

소셜네트워크



www.facebook.com/AmnestyGlobal



[@AmnestyOnline](https://twitter.com/AmnestyOnline)